

교원인사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13
제정일자	1982.02.11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3

1982.02.11.제정 1991.04.04.개정 1998.05.08.개정 2009.02.09.개정 2011.12.01.개정 2018.01.31.개정 2020.07.03.개정 2020.08.14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판부서 : 교무처

제 1 장 총 칙

- 제1조(적용 및 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화신학원 정관(이하 "정관"이라 한다.) 제6장 제1절 제3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(학교의 장을 제외한다.)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인사위원회"라 한다.)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위원회에 관하여 법령, 정관 및 본교 각종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인사위원회의 기능)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총장이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<개정 2018.01.31.>
 - 2. 총장이 교직원의 보직을 임면하고자 할 때 그 보직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<개정 2018.01.31.>
 - 3.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4. 삭제 <2018.01.31.>
 - 5.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
 -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의 임명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정관 제39조의2(교원의 계약제 임용)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2의 제1항 제4호(연구실적 및 논문지도,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)를, 정관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은 정관 제39조의7의 제6항(교육, 연구 등에 관한 업적을 평가)을 참작하여야 한다.
- 제4조(인사위원회의 조직)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6인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회 구성원 중 주요 보직자의 비중은 전체 위원회 구성원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 <신설 2020.07.03.><개정 2020.08.14.>
 - ③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

교원인사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13
제정일자	1982.02.11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3

- **제5조(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)**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20.09.25.>
 -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 -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 -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6조(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)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 -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7조(회의록 작성)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.
 -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8조(인사위원회의 간사 등)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.
 - ② 간사와 서기는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제9조(운영세칙)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8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199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교육부 전문81413-236(1998.05.07.)호에 의거 1998년 5월 8일부터 "부산경상전문 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4조①항 개정(법률 제9356호)과 관련하여 2009년 2월 9일부터 "학장"을 "총장"으로 한다.



교원인사위원회 규정

문서번호	BSKS-3-1-13
제정일자	1982.02.11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3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고등교육법 제18조 ②항 개정(2011.07.21.), 교육과학기술부 전문대학과 -8845(2011.11.17.)호에 의거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"부산경상대학"을 "부산경상대학 교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『교학처』를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『산학처』로,『기획처』를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